

[디자인분쟁]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-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: 특허법

원 2018. 12. 6. 선고 2018허3598 판결

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(갑 제2호증)

- 1) 등록번호/출원일/등록일: 디자인등록 제716064호/2013. 7. 23./2013. 11. 6.
- 2) 물품의 명칭: 식품보관용 밀폐용기

3) 주요 도면:



[사시도]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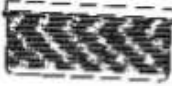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[정·배면도]



[좌·우측면도]

2.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

구분	확인대상 디자인	선행디자인 1	선행디자인 2	선행디자인 3
사시도				
정·배면도				
좌·우측면도				
평면도				
저면도				
뚜껑부 확대사진				

3. 특허법원 판결요지

나.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
1) 관련 법리

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(이하 '통상의 디자이너'라고 한다)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).


한편, 공지디자인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,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·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,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·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).


구체적 사안의 판단

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.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,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.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, 그 안에 회사명인 'emsa'가 기재되어 있다.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

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.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.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.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.

먼저 차이점 ①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

에 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. 차이점 ②와

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과 같이

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. 차이점 ④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. 차이점 ⑤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. 차이점 ③과 관련된

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.

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.모양의 것들인 점,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.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결론: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허3598 판결

변리사24년/변호사16년, 특허심판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